

의안처리상황표	
의안번호	20
건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발의자	성북구청장
발의연월일	2026년 8월 12일
심사위원회	행정기획위원회
의결결과	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
이송연월일	2026년 9월 8일
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	년 월 일 조례 제 호
<요지>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(의안번호 제2019-483호)에 따라 국민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 : 2026년 8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(의안번호 제2019-483호)에 따라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(사용허가)에 예약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
- 나. 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추가, 과도한 특혜차단
- 다. 제5조(사용시간) 신설하여 공정한 기준 마련
- 라. 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에 사용허가 취소조건을 명확히 하였으며, 위반행위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함
- 마. 제17의2(지도·감독), 제17의3(위탁의 철회 및 취소)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~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6. 7. 9. ~ 2026. 7. 29. (20일간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) 입법예고 의견제출 결과: 의견 없음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- 아동영향평가: 원안동의이나 검토사항을 추후 통합예약시스템
변경시 반영권고

(검토사항 : 예약현황 공개과정에서 아동·청소년이 이용정보를
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개인정보가
노출되지 않도록 공개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할 것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⑦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체육활동”을 “체육활동(단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
- 1. 체육시설 대관: 06:00 ~ 23:00
- 2. 강습 프로그램: 06:00 ~ 22:00

제7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의 제한 등)”을 “(사용허가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

호 외의 부분 중 “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”을 “퇴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체육시설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7조의3(위탁의 철회 및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

변경한 경우
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5.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

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임영근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8월 28일

제출자 :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서울시 「자치구 공공체육시설 야간운영 연장 협조」 관련 가이드라인(예정)과 관련한 협조근거 마련을 위해, 운영시간을 24시로 수정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현행 제5조제2항 문장 끝에 다음 단서 조항을 붙임.
“다만,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”
-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23시” 를 “24시” 로 수정.

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23:00”을 “24:00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(생 략)	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 다만,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1. 체육시설 대관: 06:00 ~ 23:00	1. ----- 24:00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체육활동”을 “체육활동(단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다만,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 대관: 06:00 ~ 24:00

2. 강습 프로그램: 06:00 ~ 22:00

제7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의 제한 등)”을 “(사용허가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”을 “퇴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체육시설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7조의3(위탁의 철회 및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 2.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 3.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
 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5.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용허가) ① ~ ⑤ (생략)	제3조(사용허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⑦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.</u>
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	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등의 <u>체육활동</u>	4. ----- - <u>체육활동(단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)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설의 개방) (생략)	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다만,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u>
	<u>1. 체육시설 대관: 06:00 ~ 24:00</u>
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

3. ~ 5. (생략)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·② (생략)

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2. 강습 프로그램: 06:00 ~ 22:00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-----
--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체육시설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퇴장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17조의2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7조의3(위탁의 철회 및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5.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.